

(가)협치성북민간추진단 규약 (안)

(가칭)협치성북민간추진단은 성북구 주민이 주도하는 민민 협력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와 성북구청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 가. 여러 단체와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운영 원리를 도출한다.
- 나. 중북 사업 단체들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다. 성북구와 주민 생활의 발전에 기여한다.
- 라. 성북구 주민들 간의 연대를 통해 성북 협치 정책들을 공유하고 활동 및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이름) 이 모임은 “(가)협치성북민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추진단’은 성북구 주민이 주도하는 민민 협력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와 성북구청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추진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둔다.

제4조(사업) ‘추진단’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4차 회의 때 구체적으로 논의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권리)

- ① 성북구 주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 중 협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은 추진단에서의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개인의 조건에 맞게 제4조에 정한 추진단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단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금전·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가입)

추진단의 목적에 동의하는 성북구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추진단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 ② 탈퇴한 회원이 미리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징계) 추진단의 기본원칙과 규약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추진단 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라 주의, 경고, 1년 이내의 회원자격정지, 제명 중 하나의 징계를 줄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0조(총회의 위상) 총회는 추진단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의 소집과 방식)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 사이에 정기총회를 열어야 한다.
- ② 임시총회는 총회 구성원 1/3 이상의 동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집한다. 총회 구성원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하는 임시총회는 동의한 회원의 대표가 소집하며,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가 소집한다.
- ③ 총회 소집자는 의안의 성격에 따라 총회 방식을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④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일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 방식의 총회는 7일 이상의 투표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안건)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①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
- ② 규약의 제정과 개정
- ③ 다른 기관과의 합병 또는 해산

- ④ 연간 사업 목표 및 우선순위의 결정과 기타 의견 수렴
- ⑤ 전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서의 심의
- ⑥ 총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기구의 설치
- ⑦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 ⑧ 총회 구성원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 안건

제14조(총회의 개회와 의결)

- ①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의 해임, 규약의 제정과 개정, 추진단의 해산은 출석한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부결된 안건을 재의하기 위한 총회는 부결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열 수 있다.
-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체한다. 위임장은 총회 전날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상설 집행기구이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원·분야별 분과 모임의 활동을 촉진·조정·지원·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결정을 하기 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7조(당연직 운영위원의 선임과 해임)

- ① 당연직 운영위원은 분야별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 ② 선출방식은 분야별 분과 모임에서 결정한다.
- ③ 당연직 운영위원은 분야별 분과 모임의 판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④ 당연직 운영위원의 사임, 유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분야별 분과 모임에서 다른 1인을 선출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안건) 다음 사항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① 운영위원회 대표의 선임과 해임
- ② 총회에 상정할 의안. 단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 수의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하는 임시총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제외한다.
- ③ 운영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
- ④ 운영위원회의 분과 또는 추진단 사무국의 구성
- ⑤ 추진단 사무소의 설치와 변경
- ⑥ 운영위원 1/3 이상이 발의한 안건
- ⑦ 회원 징계

제20조(운영위원회의 대표)

- ①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추진단 사무국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 ③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운영위원의 투표로 운영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을 둘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분기마다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임시회는 운영위원회 의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요구한 사람이 소집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때 다른 운영위원을 지명하여 위임하는 출석은 인정되지 않으나, 별도로 운영위원이 아닌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의사정족수에 반영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회 대표의 해임은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출석한 운영위원의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장은 위원별로 회의 출석 여부, 의안별 표결 결과, 회의 내용을 7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 여부만 공개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산하 집행기구 설치) 운영위원회는 사무국 또는 집행단위를 둘 수 있다.

제5장 분야별 분과 모임

제23조(분야별 분과 모임)

- ① 분야별 분과 모임은 성북구 내 협치 정책과 관련된 분야별 모임을 조직하여 정보 공유 및 제안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② 분야별 분과 모임은 추진단 규약에서 어긋나지 않는 자체 규칙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 ③ 분야별 분과 모임은 분과위원장과 분과 간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6장 회비와 재정

제24조(재정규칙) 운영위원회는 추진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회비를 결정할 때 분야별 분과 모임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추진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 ① 운영위원회는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연도별 결산 보고서를 총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타기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 사업의 규칙에 따라 별도로 집행 및 정산하고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

- ① 추진단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② 감사는 당연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 활동 중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 우리단체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위 규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 창립총회 이후 이 규약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